의안번호	제744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10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10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744

제안연월일 : 2024년 10월 10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전문직위 운영과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가산점 기준 마련 등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6조)

❍ 전문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을 위한 관련 가산점 기준 마련(안 제27조)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정비(별표 5)

❍ 직렬별 가점대상 자격증 추가(별표 16)

❍ 다자녀 공무원 가산점 신설(별표 17)

3. 규칙안(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5조의1을 제1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5조의1)의 제목 “의1(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으로, “0.48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0.48점
2. 제3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2.4점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 다음 각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직위 공모를 통한 임용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따로 정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모직위 임용일로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 ·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가산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별표 5, 별표 16,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6조 관련)

1. 자격증의 종류

가. 5급부터 9급까지 (관리운영직군 제외)

계급 /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전산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 · 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회복지사 1급,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회복지사 2급,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컨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교통, 조선)

계급 /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공업(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업(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섬유)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품질경영, 산업안전, 섬유)
공업(화공)(가스)	기술사(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화공)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화학분석)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자원)	기술사(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자원관리,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토양환경, 화훼장식)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림토양평가관리)
농업(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조경, 산림,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수산질병관리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해양수산(선박)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 · 2급항해사, 1 · 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 · 4급 항해사, 3 · 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컴퓨터응용가공) 5 · 6급 항해사, 5 · 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임상심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 · 보조기)	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광해방지, 방사선관리, 화공,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광해방지, 토양환경, 화공, 산림, 식물보호, 온실가스)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농림토양평가관리, 식물보호)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설(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계급 /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시 설 (디 자 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 송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전파전자)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제어)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제어)
방 송 통 신 (전 자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계급 /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나. 관리운영직군

구분 / 직렬	관리운영7급 이상	관리운영8급 이하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 무대조명전문인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구분 / 직렬	관리운영7급 이상	관리운영8급 이하
화공운영	기술사(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 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사무운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비고>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위 표에서 명칭변경, 통합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위 표 가호의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전산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해당직급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별표 17]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 (제28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항 목</th><th colspan="7">부여기준 및 가산점</th></tr>
<tr><td rowspan="6">1 업무 추진 유공</td><td rowspan="2">의정 발전 기여</td><td colspan="4">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td><td colspan="3">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td></tr>
<tr><td colspan="4">0.5점</td><td colspan="3">0.1~1.0점</td></tr>
<tr><td colspan="7">○ 기 준 일: 문서 시행일(최종결재일) 또는 등록일
○ 반영대상
- 특수업무, 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으로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새로운 아디이어·시책발굴, 담당 업무 개선실적이 탁월한 자, 또는 임용권자의 지시사항
○ 증빙서류: 공적자료 사본(임용권자 결재문서 포함) 및 사무분장표
○ 인사부서에서 검증
※ 다만,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사 가능</td></tr>
<tr><td rowspan="2">예산절감, 세수증대 기여</td><td>100억원 이상</td><td>50억원 ~ 100억원 미만</td><td>10억원 ~ 50억원 미만</td><td>1억원 ~ 10억원 미만</td><td>5,000만원 ~ 1억원 미만</td><td>1,000만원 ~ 5,000만원 미만</td><td>1,000만원 미만</td></tr>
<tr><td>1.5점</td><td>1.0점</td><td>0.7점</td><td>0.5점</td><td>0.4점</td><td>0.3점</td><td>0.2점</td></tr>
<tr><td colspan="7">○ 기 준 일: 성과금지급 통보일(문서 시행일)
○ 반영대상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반영(성과금 지급된 사항) 단, 격려차원에서 지급된 격려금은 제외함(예산담당부서 공문 참조)
○ 증빙서류: 공적내역 및 성과금 지급 공문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td></tr>
<tr><td rowspan="2">수 상</td><td colspan="3">훈·포장</td><td colspan="2">대통령표창</td><td colspan="2">지방행정의 달인</td></tr>
<tr><td colspan="3">0.5점</td><td colspan="2">0.3점</td><td colspan="2">0.3점</td></tr>
<tr><td colspan="7">○ 기 준 일: 포상 수여일(기재일자)
○ 반영대상: 훈.포장, 대통령 표창, 지방행정의 달인 ※ 상장 및 기관표창 제외
○ 첨부할 서류: 수상자료(표창장) 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td></tr>
<tr><td colspan="2" rowspan="3">2 제안채택</td><td>▸중앙 단위</td><td>금상</td><td>은상</td><td>동상</td><td>장려상</td><td>노력상</td></tr>
<tr><td></td><td>1.0점</td><td>0.8점</td><td>0.6점</td><td>0.4점</td><td>0.2점</td></tr>
<tr><td>▸도 단위</td><td>금상</td><td>은상</td><td>동상</td><td>장려상</td><td>노력상</td></tr>
<tr><td></td><td>0.5점</td><td>0.4점</td><td>0.3점</td><td>0.2점</td><td>0.1점</td></tr>
<tr><td colspan="7">○ 기 준 일: 채택결과 통보일(문서 시행일) 또는 상장 수여일
※ 동일제안으로 중복수상 시 유리한 공적 1건만 반영
○ 증빙서류: 채택관련 공문 및 상장사본
○ 인사부서에서 검증</td></tr>
<tr><td colspan="2" rowspan="2">3 다자녀 출산</td><td colspan="3">셋째 자녀 이상 출산</td><td colspan="3">둘째 자녀 출산</td></tr>
<tr><td colspan="3">1.5점</td><td colspan="3">1.0점</td></tr>
<tr><td colspan="7">○ 기 준 일: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연계 육아휴직 복귀일
※ 규칙 개정 후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반영대상: 평가기간 중 가산점을 신청한 자(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남성·여성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나, 도의회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인사부서에서 검증</td></tr>
</table>

※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내 해당계급에서 발생한 성과·공적에 한정하며, 동일공적으로 2개 이상의 실적 가산점 요건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항목의 실적 가산점만 부여한다.[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우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시연도 및 회수	(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급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격면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5조의1(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 ⑥ (생 략)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생략)	제27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 다음 각목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신 설>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직위 공모를 통한 임용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따로 정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공모직위 임용일로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0.48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고,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다음 각 호의 기준----------.
<신 설>	1. 제1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0.48점
<신 설>	2. 제3항에 따른 가산점: 최대 2.4점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가산점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